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9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2. 1. 21.
4. 회부일자 : 2022. 1. 25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,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1. 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(안 제4조)
 - 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’ 조문 삭제하고 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
 - 기금의 용도 각 호 삭제

2.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항 개정(안 제5조제2항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)
 - 교육지원청,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 집행 및 지출이 가능하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

IV. 참고사항

1. 관련법규: 별첨 7
 -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2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3. 협의: 해당기관 없음
4. 기타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 - 입법예고(2021. 12. 2. ~ 12. 22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3)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통보서(별첨 4)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(별첨 5)
 - 학생인권영향평가 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별첨 6)
 - 관계법규 : 별첨 7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098호로 제출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, 교육지원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에도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동 기금을 집행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과 각 호를 삭제하고(안 제4조), 교육지원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에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5조).
- 먼저 안 제4조와 관련하여,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2월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」을 통해 냉·난방개선 및 석면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2,317억 2백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동 기금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동 기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바,¹⁾

동 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기금의 직접 집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²⁾.

- 따라서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재량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금 회계에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안 제5조는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본청, 교육지원청, 교육시설관리본부에 각각 과장, 행정지원국장, 총무부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교육부의 「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근거한 것으로³⁾,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 사업비를 직접 지출·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1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해당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
3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2) 제30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(2021.12.31.).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, 4~5페이지 참조.

[주요내용]

- ① 시설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필요
- 현행 관련 조례는 “기금의 용도”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은 기금재원의 적립을 위한 여유재원적립 이외에는 기금을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음
- (중략)
-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지출계획한 시설비의 경우, 조례가 “기금의 용도”를 직접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없다는 점에서 지출계획한 시설비를 기금이 직접지출할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
 - 그러므로 (중략) 기금을 통해 시설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이후, 시설비를 신규 편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3) 교육부, ‘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’, 163페이지.
-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.

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